

[사 건 명] 행심 2019 - 4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6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6시간, 부가적 특별 교육이수(학생 4시간, 보호자 10시간)』 처분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6시간, 부가적 특별 교육이수(학생 4시간, 보호자 4시간)』 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6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은 발달장애 2급을 가진 1학년 0반 학생으로 2018년 11월부터 교실, 복도 등의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었으며, 다른 학생들을 때리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함.
- 나. 이에 1학년 0반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이 2018.12.07. 청구인에 대한 일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으로

부터 민원 접수된 사실을 전달받아 사안 확인 후 즉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함.

다. 피청구인은 2018.12.07. 가해학생 긴급 선도 조치 중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조치한 후, 2018.12.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개최하여,

라. 2018.12.31. 청구인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6시간 등』 처분 조치함.

마. 2019.02.26.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발달장애 2급으로 정신연령이 6세 아동 수준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폭위 위원 구성시,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피청구인은 학폭위 관련 법령과 순서만 준수하였음.

나. 피청구인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 급우들에게 발달장애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우선하지 않았고, 피해학생과 피해학부모만의 의견을 학폭위에 반영하여 진행하였음.

다. 청구인은 또래보다 어린 6세 수준의 인지능력과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학폭위에서는 동일선상에서 의결하였고, 발달장애의 원인과 증상

에 대해서는 교사들조차 이해하려 하지 않고 청구인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고 급우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음.

라. 청구인 측은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일반적인 아동들의 피해사건이 아니며, 청구인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센터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을 일으킨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에 민원이 접수되자 서둘러 발달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가해자라는 이유로 처벌조항의 여러 가지 복수의 조치를 병과하여 가혹한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바. 피청구인은 익명으로 제보했다는 민원사안을 사실에 부합하여 제대로 된 조사나 사전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학부모들이 올린 민원 내용만을 인용해서 학폭위를 열었으므로 규정에 어긋나며 장애인 차별에 속한다고 할 것임.

사. 발달장애아로서 적응이 어려운 청구인을 담임교사가 도움반으로 내모는 일이 반복되면서 도움반에서는 청구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반인권적 행동을 했다고 생각되며, 현재 학대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권익옹호단체에서 조사 중에 있음.

아. 청구인은 2018년 11월부터 전에 보이지 않던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등교시간만 되면 도움반이 싫다고 욕을 하고 소리 지르는 등 안하던 행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학교에 가서는 바지를 벗는 이상행동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였음.

자. 학폭위에 참석한 ♀♀♀♀♀ 지원센터 권익옹호팀의 사회복지사와 ♡♡♡♡ 부모연대 팀장은 청구인 측이 섭외하였으며, 학폭위 할 때 처음부터 동석했던 것이 아니라 학폭위 맨 마지막에 참석하여 20분 남

것 짧은 시간에 간단한 답변만 요구받았음.

차. 피청구인이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한 최대한의 교육적인 방법의 처분을 했다는 것에 청구인은 동의할 수 없음.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학폭위위원을 구성하였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학폭위는 특정 사안 심의를 위해 별도로 구성된 기구가 아님.

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에 맞게 학폭위를 개최하였으며, 청구인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높음 3점, 지속성 높음 3점, 고의성 보통 2점, 반성정도 높음 1점, 화해정도 보통 2점, 총 11점으로 제6호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점수이나, 청구인이 장애아동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5호 조치로 경감하여 처분하였으며, 5호 조치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이기는 하나 결국 가해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였음.

다.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 지원센터’ 권익옹호 팀장과 ‘♡♡♡♡ 부모연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계자를 특수교육전문가로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학폭위 개최 과정에서 가해자라는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

없이 법령과 순서만 준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라. 청구인의 담임교사는 장애아동 지도에 대한 연수를 60시간 이수한 바 있고,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학폭위 이전에 청구인의 부모, 해당학급 학부모, 생활안전부장 교사, 담임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와 3차에 걸친 협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해와 학급 적응력 향상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있음.

마.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기에 청구인에 대해서 최대한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수 있는 처분을 한 것이며, 이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등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건당시 발달장애(아스퍼거 증후군) 2급을 가진 1학년 0반 학생으로, 2018년 11월부터 교실, 복도 등의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었으며, 피해학생들을 때리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해학생들에게 2018년 11월부터 교실, 복도 등의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었으며, 피해학생들을 때리고 욕을 하는 등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발달장애 2급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점, 사건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10시간) 이수 처분’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보호자의 상황과 청구인이 행한 학교폭력의 행위태양 및 결과에 비하여 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10시간) 이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성정도가 다소 부족한 점,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에게 심리치료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치료, 그리고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 및 치료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청구인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4시간) 이수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6시간) 이수 및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10시간) 이수 처분’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6시간) 이수 및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4시간) 이수 처분’으로 변경처분 하도록 한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형평 및 비례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청구인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4시간) 이수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6시간) 이수 및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10시간) 이수 처분’ 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6시간) 이수 및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4시간) 이수 처분’ 으로 변경처분 하도록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여 재결한다.